

2019 캐나다 경쟁법 및 외국인 투자법 적용 분석

경쟁법 – 합병 통지 요건 분석 방법	2
캐나다 투자법 – 외국인 투자 통지 요건 분석 방법	3

경쟁법 - 합병 통지 요건 분석 방법

특정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는 캐나다 경쟁법에 사전 합병 통지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경쟁법상 특정 합병 거래가 이러한 필수 사전 합병 통지를 요하는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도표는 통지 요건을 면제 받기 위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당사의 구속력 있는 법률 자문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표상 제시되어 있는 금액 기준은 2018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확정된 회계년도 재무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캐나다 자산”
 “캐나다 자산”에는 재무적 자산, 영업권, 캐나다 사업 장부상 일체의 무형자산 및 캐나다 소재 지식재산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동일한 모회사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2개의 회사는 “계열사”에 해당됩니다.



캐나다 투자법 – 외국인 투자 통지 요건 분석 방법

용어의 정의

통지(Notification)는 일반적으로 거래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법정 고지 절차를 지칭함.

심의(Review)는 거래 종료를 위한 사전 절차로 통상 45-75 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캐나다 사업 여부

만약 인수 대상 회사가 (연결 기준):

- 캐나다 내 자산;
- 캐나다 내 사업장; 그리고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캐나다 내에 고용된 임직원 (또는 자가 취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답은 “예”. 그렇지 않다면, 대답은 “아니요”.



인수인의 성격

- 만약 인수인이 WTO 회원국 국적자의 궁극적 지배를 받는다면, 해당 인수인은 “WTO 투자자”에 해당.
- 만약 인수인이 WTO 투자자이나, 외국 정부(정부 부처, 국부 펀드 등 수입 기관 포함)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인수인은 “국영 기업”에 해당.
- 만약 인수인이 WTO 회원국 국적자의 궁극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외국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인수인은 “비 WTO 투자자”에 해당.



통제권의 인수 여부

- 만약 인수 대상이 회사이며, 투자자가 의결권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대답은 “예”.
- 만약 투자자가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 인수하고, 거래 종료 후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 대답은 “예”. 그렇지 않다면, 대답은 “아니요”.
- 만약 인수 대상이 회사가 아니고, 투자자가 50%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인수하는 경우 대답은 “예”. 그렇지 않다면, 대답은 “아니요”.



비 캐나다인 투자자 지위

- 만약 인수 주체의 과반수 의결권을 캐나다인이 보유하고, 기타 다른 사실적인 방법으로 비 캐나다인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다면 해당 투자자의 캐나다인 투자자 지위에 대한 대답은 “예”.
- 만약 인수 주체가 궁극적으로 공개 회사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지배되고, 이사 중 캐나다인이 3 분의 2 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의 캐나다인 투자자 지위에 대한 대답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답은 “아니요”.



문화 사업

문화 사업이란 매우 미미한 정도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칭합니다:

-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신문(인쇄 또는 디지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 필름, 영상 기록물, 음성 또는 영상 음악 기록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전시;
- 인쇄 또는 디지털 형태 음악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또는
- 일반 공중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라디오 통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활동; 위성 프로그래밍; 또는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가치/인수 가치

기업 가치는 인수 대상 사업의 연결 기준 가치를 말합니다. (캐나다 주체 또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음.)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자산 인수의 경우: (인수 가격) + (비 운전성 인수 부채) - (인수 대상 현금 및 등가물).
- 비공개 회사 주식 인수의 경우:
(인수 가격) + (비 운전성 부채) - (현금 및 등가물).
- 공개 또는 부분적 공개 회사 주식 인수의 경우:
(시가 총액) + (비 운전성 부채) - (현금 및 등가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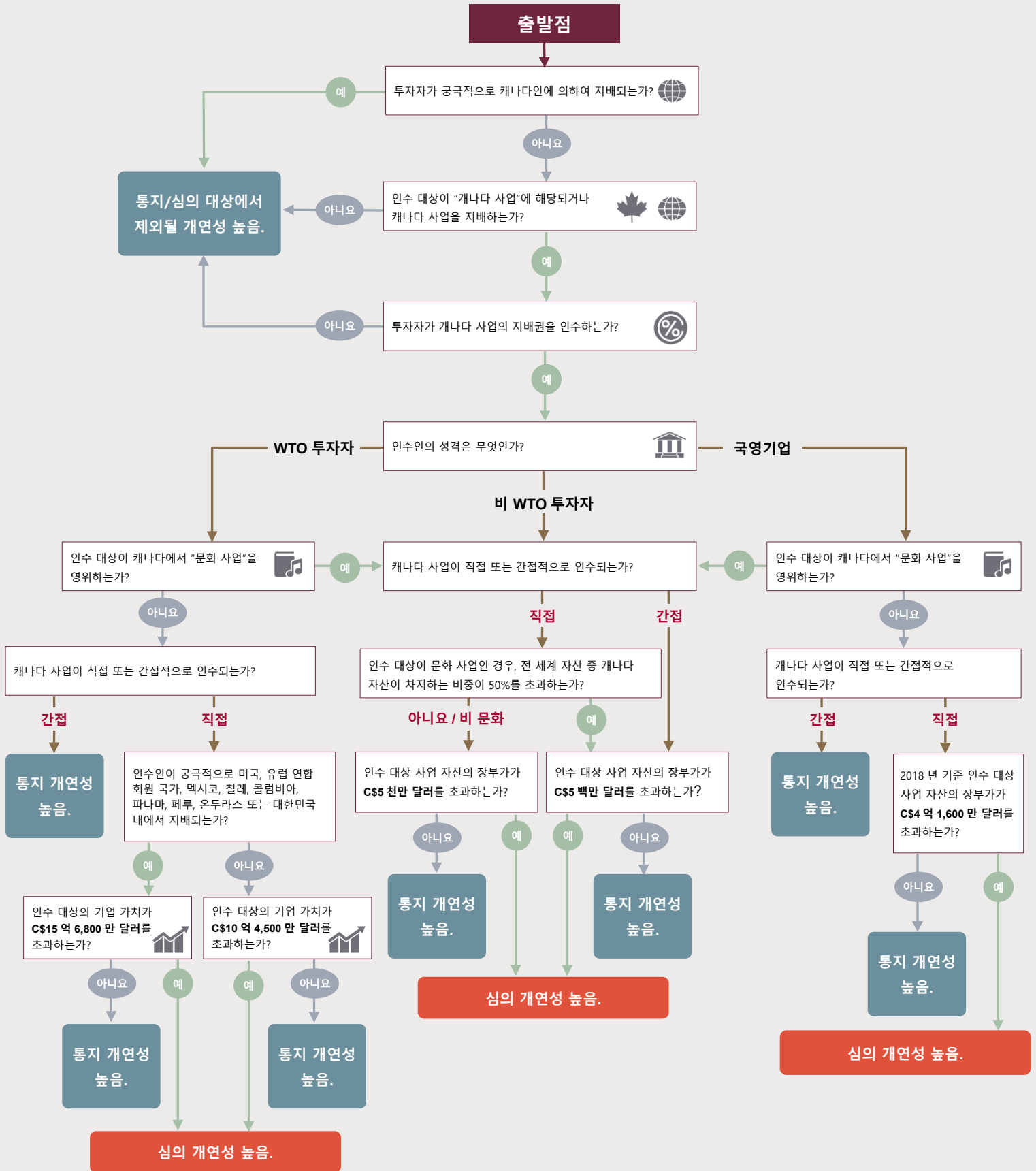
기업 가치는 반드시 캐나다 달러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환율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다소 복잡하므로, 당사 실무 그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인수 가격은 거래 서류/조건에 따라 캐나다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댓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제외됩니다:

- (a) 만약 10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공정 시장 가격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 (b) 만약 댓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완료 시점에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정 시장 가격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 (c) 만약 명목적 댓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간 공정 시장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 시장 가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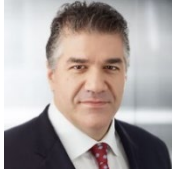
부채와 현금 및 등가물은 인수 대상 사업의 가장 최근 분기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시 몇 가지 세부적인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당사 실무 그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 도표는 통지 요건을 면제 받기 위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당사의 구속력 있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귀하의 Stikeman Elliott 연락처 또는 아래와 나열된 당사의 경쟁법 및 외국인 투자 자문 그룹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폴 콜린스 Paul Collins
대표 변호사, 경쟁법 및
외국인 투자 자문 그룹
+1 416 869 5577
pcollins@stikeman.com



**캐서린 케이
Katherine L. Kay**
+1 416 869 5507
kkay@stikeman.com



**마이클 킬비
Michael Kilby**
+1 416 869 5282
mkilby@stikeman.com



**마이클 라스키
Michael Laskey**
+1 416 869 5541
mlaskey@stikeman.com



**로슨 헌터
Lawson A.W. Hunter, QC**
+1 613 566 0527
lhunter@stikem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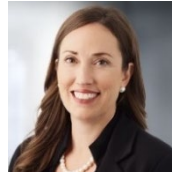
**션 네일란
Shawn C. D. Neylan**
+1 416 869 5545
sneylan@stikeman.com



**수잔 허튼
Susan M. Hutton**
+1 613 566 0530
shutton@stikeman.com



**엘리엇 콜러스
Eliot Kolers**
+1 416 869 5637
ekolers@stikem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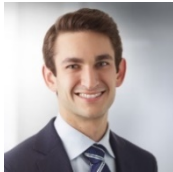
**대니엘 로얄
Danielle Royal**
+1 416 869 5254
droyal@stikeman.com



**애슐리 피오토로우스키
Ashley Piotrowski**
+1 416 869 5648
apiotrowski@stikeman.com



**메건 맥도널드
Megan MacDonald**
+1 613 566 0544
mmacdonald@stikeman.com



**기디언 크윈터
Gideon Kwinter**
+1 416 869 5653
gkwinter@stikem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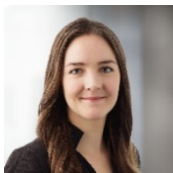
**알렉산드라 우르반스키
Alexandra Urbanski**
+1 416 869 6856
aurbanski@stikeman.com



**마이클 로젠스탁
Michael Rosenstock**
+1 613 564 3474
mrosenstock@stikeman.com



**제시카 루트릿지
Jessica Rutledge**
+1 613 564 3486
jrutledge@stikeman.com



**빅토리아 해일
Victoria Hale**
+1 416 869 5553
vhale@stikeman.com

당사 경쟁법 및 외국인 투자 자문 그룹은 캐나다와 국제적인 주요 거래는 물론 모든 사업 분야를 망라한 일상적인 법규 준수와 관련된 세련되고 실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관련 송무 분야에서 당사 자문 그룹은 수위 높은 형사법, 규제법 및 집단 소송 등 관련 이슈를 생동감 있고 고도로 효율적인 당사의 송무 역량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캐나다 거래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로펌 중 하나로, 캐나다 주요 산업 및 상업 분야 경쟁법 이슈 전개에 대한 깊이있는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쟁 위원회 및 여타 정부 기관의 규제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거래를 효율적으로 평가 및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이루어진 가장 주목할만한 외국인 투자 거래에서 캐나다 인수 대상과 외국 인수인 양 당사자를 모두 법률 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들은 경쟁 및 외국인 투자 심의 분야에서 점차 그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대정부 및 언론 관련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당사의 특수한 역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쟁 분야 송무 그룹은 카르텔 조사, 검찰 기소 및 결정, 면책 및 경감 신청, 합병 소송, 경쟁국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민사적 이슈 등 모든 양상의 이슈를 처리하고, 경쟁법 위반 및 경제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포함한 각종 소송에서 고객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업계 선두 주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실무 그룹은 경쟁국, 캐나다 검찰, 집단 소송의 원고 등을 상대해야 하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은 물론 각종 협상 테이블에서 열정적 변론, 고객의 이해를 고려한 전략적 집중 등 최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당사 경쟁법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블로그 [The Competitor](#) 를 통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기 원하시면, www.thecompetitor.ca 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Band 1 로펌, 경쟁/반독점 분야

Chambers Canada 2019 선정

Band 1 로펌, 캐나다 경쟁/반독점 분야

Chambers Global 2018 선정

Elite 로펌, 글로벌 경쟁법 분야

GCR 100 2018

Top-tier 로펌, 경쟁/반독점 분야

The Legal 500 Canada 2018

Top-Listed Metro Award 수상,

경쟁법 분야: 오타와 - *The Best Lawyers in Canada 2019*

“최다 추천”, 경쟁법 분야

The Canadian Legal Lexpert Directory 2018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stikeman.com/kh 를 방문하셔서 당사의 Knowledge Hub 에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저작물에 표기된 특정일 현재의 법률 이슈와 전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저작물은 당사의 구속력있는 법률 자문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당사의 면책 약관은 당사 웹사이트 www.stikeman.com/legal-notice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ikeman Elliott LLP 2019-02-01